# 검사기준 제 · 개정(2007년 하반기)

※ 개정사항 중 인용조문이 변경된 경우 또는 간단한 용어정리로 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였음.

# 1. 선박설비기준

-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-59호, 2007, 8, 24 개정
  - 레이다반사기의 성능기준을 국제표준규 격(ISO) 및 한국산업규격(KS) 성능기준 으로 완화하고 설치대상 선박 완화
-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-109호, 2007, 11, 2 개정
  - 여객선의 변소설비 기준과 500톤미만 여객선 등의 자차수정표 비치 기준 완화
  - 어선에 대한 조타시야 확보 기준 신설

# 2.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

-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-60호, 2007, 8, 24 개정
  - 레이다반사기의 성능기준을 국제표준규격 (ISO) 및 한국산업규격(KS) 성능기준으로 완화
-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-113호. 2007. 11. 7 개정
  - GPS 플로터, 투척식소화기 및 퇴적오니 제거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신설

# 3.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

■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1호, 2007. 11, 22 제정○ 예비검사 대상,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

# 4.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등에 관한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1호, 2007, 11, 22 제정
  - 우수사업장 지정대상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거을 정합
  - 우수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정함
  -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함

# 5. 선박구명설비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5호, 2007, 11, 22 개정
  - 진수설비 정비점검기록부 한글부분에 영 역(英譯)부분 추가

# 6.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1호. 2007. 10. 31 개정
  - '화물고박지침서' 를 '화물적재고박지침 서' 로 변경

# 7.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

- 해양수산부령 제388호. 2007. 10. 31 개정
  -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작성대상을 '화물 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'제3조로 이관 정리

# 8.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3호. 2007. 11. 22 전부개정
  - 컨테이너 점검자의 자격요건 삭제

# 9. 선체보호도장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44호, 2007, 12, 17 제정
  - 선체 보호도장 시스템 시험의 기본요건 마련
  - 도장검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

# 10. 선박복원성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5호, 2007, 11, 2 개정
  - 여객선 동요시험 생략 근거 마련
  - 여객선 복원성 기준에 국제복원성기준 (IS Code)의 일반기준 및 기상기준 수용
  -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예인 · 구조 · 조사 및 측량에 사용하는 선박의 복원성기준 신설
  -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12미터 이상 24미 터 미만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신설
  -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어선의 복원성 기준 신설
  -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복원성 기준 신설
  -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한 복원성기준 신설
  -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성 계산시 요건 신설
  - 복원성자료의 승인 기준 및 절차 신설

# 11. 선박만재흘수선기준

■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3호, 2007. 11, 2 개정○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, '07. ○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른 만재흘수선기준

적용대상 확대

-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⇒ 선박길이 12 미터 이상

# 12. 선박방화구조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24호, 2007, 7, 11 개정
  - 여객선을 신조시 가연성 재질(FRP재 등) 사용 제한 신설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4호, 2007, 11, 2 개정
  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. '07.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화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13. 강선의 구조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6호, 2007, 11, 2 개정
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. '07. 11.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14. 강화플라스틱선(FRP)의 구조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7호, 2007, 11, 2 개정
  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. '07. 11.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## 15. 목선의 구조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9호, 2007, 11, 2 개정
  - 11.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

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16.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

○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, '07.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17.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0호. 2007. 11. 2 개정
  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, '07.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화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1호, 2007, 11, 2 개정
  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. '07.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확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19.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5호, 2007, 11, 2 개정
  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, '07.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20.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8호, 2007, 11, 2 개정
  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, '07.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

### 21. 고속선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5호, 2007, 11, 2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8호, 2007, 11, 2 개정
  - 용어정리
    - 최대속력 ⇒ 최고속력(m/s)

# 22.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89호, 2007, 10, 31 개정
  - 고시의 상위 근거규정을 선박안전법 제 41조 제4항으로 함
  -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

# 18.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23.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2호, 2007, 10, 31 개정
  - 고시의 상위 근거규정을 선박안전법 제 41조제4항으로 함
  -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등에 대하여 "관할지방해운관청" 대신 "해양수 산부장관"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

### 24. 선박기관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6호, 2007, 11, 22 개정
  - 축의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으로 고무피 복 외에 합성수지피복도 인정토록 개정
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, '07.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25. 선박소방설비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7호, 2007, 11, 22 개정
  - 무인기관실 용어의 정의 수정
  - 투척용소화기 신설에 따른 소화제의 용 량 및 수압시험 제외 조항 신설

# 26.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88호. 2007. 10. 31 제정
  -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를 정함
  -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선박운항정보 및 표시방 법을 정함
  -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통한 선박운항정보 의 발신주기 등 장치별 기술요건을 정함
  -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상용통신망을 이용 하는 경우 통신회사의 선박운항정보 전 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
  -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동 시스템을 공유하는 기관 및 선박운항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
  - 관계기관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연 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 항을 정함
  -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선박운항정보의 제공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

# 27. 선박전기설비기준

■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8호, 2007. 11, 22 개정○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. '07.

-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- 한국산업규격 변경

# ○ 투척용소화기 신설에 따른 소화제의 용 28.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

- 해양수산부령 제387호. 2007. 11. 4 개정
  - 200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국제해 상위험물규칙(IMDG Code)의 개정내용 수용

# 29.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0호, 2007, 10, 31 개정
  - 직립 부표찰의 부착 및 부착예외 대상 신설
- 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상한기준을 61℃에 서 60℃로 개정
- 화약류 중 연화(폭죽)에 대한 세부분류기 준 신설

# 30. 선박자동화설비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9호. 2007. 11, 22 개정
- 선박안전법 개정(법률 제8221호, '07.
  11. 4. 시행)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의 일 환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

# 31. 잠수선 기준

-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07호, 2007, 11, 2 개정
  - 최대탑재인원을 최대승선인원으로 변경 하는 등 관련 용어 정리